

1. 개정이유

「검역법」 개정('20.3.4.공포, '21.3.5.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검역 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 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한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조)

나. 검역조사 대상인 화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의3)

다.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를 체계화하여 명시하고, 항만의 경우 검역통보 시 생략신청 및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별지 제2호서식)

마. 검역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정의)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매개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쥐
2. 모기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매개체

제2조의 제목 “(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을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을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특정

행정단위의 지역

3.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나 특정 행정단위의 지역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검역조사 대상인 화물)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 및 액체류 화물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그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소지한 물품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3항제2호”로,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및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검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항만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고 및”을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즉시 검역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검역 연

기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검역공무원의 업무상 안전등을 위해 즉시 검역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다목1)부터 7)까지에 따른 운송수단에 대한”을 “운송수단에 탑승하여”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해 출입국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항해일지·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한다)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한다)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운송수단별 특성에 따라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에 따른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 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국자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④ 선의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촉자에 대한 정보의 요구
2. 접촉한 동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설치·운영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소장이 정한다.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
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명부
3.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출입국
자가 직접 제출한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승기 검역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
한 경우
2.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3.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기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는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다.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명부

3.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제출한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한 경우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선원교대가 있었던 선박의 경우

4.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5.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경우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7.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검역 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보건위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출입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운송수단 및 출입국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를 “(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역조사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6호”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설격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고, 국내에 급속히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인 경우
2. 검역관리지역등이 아닌 곳에서 입국한 사람으로서 의심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난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소장”을 “질병대응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시 격리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말한다)”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접촉자 격리기간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최대 잠복기

5.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제16조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회향 등의 지시)”를 “(이동 등의 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향하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를 “지정하는 장소로”로, “회향·이동”을 “이동”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시신검안서”를 “시체검안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운행 중 사망한 사람의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를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 발급)”을 “(선박위생 증명서 등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박위생관리”를 “선박위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증명서(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독 증명서:”를 “소독증명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균학적 검

사증명서:”를 “병원체 검사 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8조제3항제2호”를 “법 제28조제3항”으로, “세균혈청학적”을 “병원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3항제1호”를 “법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영구로 보관해야”를 “준영구 보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의 국제공인예방접종 발급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을 “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을 “법 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삭제하고,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의3(중전의 제25조의2)제2항제3호 중 “제6조제1항제1호”를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6제1항”으로, “신고서”를 “보건상태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호”를 “제8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5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④ 법 제29조2제2항제5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3. 그 밖에 검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25조의4의 제목 “(오염지역 등의 안내)”를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지역 등”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한다.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그 밖에 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의6(검역소 시설·장비 등) 법 제29조의9에 따른 검역소의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및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2.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역장비

3. 기타검역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대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산항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수면
	가. 북위 37도 03분 59초, 동경 126도 24분 48초
	나. 북위 36도 59분 59초, 동경 126도 26분 18초
	다. 북위 36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라. 북위 36도 59분 55.2초, 동경 126도 16분 48.4초
	마. 북위 37도 00분 24.2초, 동경 126도 16분 12.7초
	바. 북위 37도 00분 58.3초, 동경 126도 16분 41.0초 사. 북위 37도 01분 52.3초, 동경 126도 18분 34.7초

별지 제1호, 제25호 서식 앞면 하단,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3호, 제16호의2,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6호, 제31호 서식 하단,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제38호 서식 뒷면 하단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를 각각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제8조제1항,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8 and 9”를 “9”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8조제1항,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8 and 9”를 “9”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장(또는 화물의 소유자·관리자)”을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Master(pilot-in command or owner)”를 “Master”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의”를 “따라 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of as specified below”를 “of”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

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 “선박위생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control certificate”를 “certificate”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를 “「검역법」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8”을 “28-2”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MINISTÈRE DE LA SANTÉ ET DU BIEN-ÊTRE”를 “AGENCE CORÉENNE DE CONTRÔLE ET DE PRÉVENTION DES MALADIES”로 하고, 같은 서식 중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를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직인”을 “증인”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510mm×355mm(일반용지 70g/m²)”를 “510mm×355mm [백상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검역법」 제28조의2제1항”을 “「검역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지역명을”을 “명칭을(「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칭을 뜻한다. 이하 이와 같다.)”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역명”을 “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91mm×61mm(인쇄용지(특급) 120g/m²)”를 “91mm×61mm[백상지(150g/m²)]”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17.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Any Change in Passengers or Crew? ☐ (Yes/No)

- ☐ 외지에서의 한국승무원 외지 변동사항 Changes in the number of Korean crew members in Foreign ports
- 승 선 Embarked : 명 • 전 선 Transference : 명
 - 하 선 Disembarked : 명 • 낙 오 Quit or missed ship : 명
- ☐ 이 항구 승선·하선 승무원/승객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 승무원 Crew members
 - 승선 출국 Embark/Exit : 명 • 하선 입국 Disembark/Entry : 명
 - 전 입 Embark for ship to ship movement : 명
 - 전 선 Disembark for ship to ship movement : 명
 - 승 객 Passengers
 - 승 선 Embark : 명 • 하 선 Disembark : 명

18. 선박위생증명서 Ship Sanitation Certificate

- 소지 여부 Valid Sanitation Certificate carried on board? ☐ (Yes/No)
- 증명번호 Certificate NO. :
- 발급기관 Issued By :
- 발급연월일 Issue Date :
- 증명서구분 Certificate Class :
- 재검사 필요 Need for Reinspection? ☐ (Yes/No)

19. 비 고 Remarks(Check Yes If applicable)

- ☐ 외지 선용품 구입/외지 수리 여부? Ship supplies purchased or repaired outside of Korea? [] Yes [] No
- ☐ 승무원 복수항 상륙허가자 또는 복수 승무원 상륙 허가자 승선 유무? Crew on board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 in Korea or crew with multiple landing permits? [] Yes [] No
- ☐ 검역감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유무? Any infectious disease cases or deaths on board? [] Yes [] No
- ☐ 감염병 매개체 유무? Infectious disease vector on board [] Yes [] No
- ☐ 오염물건 유무? Contaminated goods on board [] Yes [] No
- ☐ 위생조치 유무? Sanitary measures taken [] Yes [] No
- ☐ 병든 동물 유무? Sick animals on board [] Yes [] No
- ☐ 밀항자 발견 유무? Stowaways found on board [] Yes [] No
- ☐ 선의의 승선 유무? Ship's surgeon on board [] Yes [] No
- 진료 여부 및 결과 Treatment result(If any) :
- ☐ 도착시간으로부터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다른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 여부? [] Yes [] No
- Have any persons of goods joined the ship from another ship within the infectious disease monitoring period?
- 상대선박 명칭 및 출항일, 머무른 곳:
If yes, Other ship's name, Date of departure, and Location stayed:
-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 실은 연월일, 사람의 수 또는 물건 명칭:
Date of joining and Number of people or Quantity of goods:
- ☐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 선원교대 유무? Has crew rotation taken place within the infectious disease monitoring period? [] Yes [] No
- ☐ 부선 호출부호 Call sign of Ship towed or Barge with no power:

년(yy)

월(mm)

일(dd)장

통보자(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서명)

Name of Master or Authorized agent

(Signature)

귀하

TO

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 승무원 명부 Crew List •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수수료charge 없음No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입항·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입항·출항 확정 시에는 “최종”란에, 변경 시에는 “변경”란에, 취소 시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filling out this form 24 hours prior to departure or arrival, mark the “Notice” box. If your arrival or departure has been confirmed, mark the “Final” box. If you are making a change, mark the “Change” box. If you are canceling, mark the “Cancel” box.
2. 5번의 「선박 계선 장소(선석, 장소)」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 장소를 적습니다. For Section 5 「Position of the Ship (Berth or Station)」 with the pier or anchoring site of ship.
3. 6번 중 「경유지 및 경유지 출항일」은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적습니다. For 「Stopovers」 and 「Date of Departure from Stopover」 in Section 6, provide information of every transit since first target in reverse order.
4. 7번 중 「화물명」 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통일체계 품목분류표(HS code)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와 총 적재화물 중 적하·양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습니다. For 「Name of Cargo」 of Section 7, provide the two-digit HS code of representative luggage AND the tonnage of load/unload/dangerous/transshipment cargo.
5. 9번 중 ※는 국내 항 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 출항 예정 외국인의 입국 허가자 수를 적습니다. For ※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of Section 9, write the number of persons permitted on board between domestic ports including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permitted entry.
6. 10번의 「도착 목적」은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For Section 10 「Purpose of Arrival」, select a code from the following:
01. 적하·양하 Load/Unload 02. 적하 Load 03. 양하 Unload 04. 선박 수리 Ship repair 05. 해난 Maritime distress
06. 승무원 교대 Change of crew 07. 여객 상륙 Landing flight 08. 급유 Refueling 09. 선용품 적재 Ship's stores 99. 기타 Other
7. 11번의 「항해 구분」은 다음 코드 중 해당하는 선박만 적습니다. For Section 11 「Voyage Classification」, select applicable code from:
01. 외국적 내항선 Foreign Coaster 02. 일시 외항 Temporary Outport 03. 내외항 자격 변경 Change of Qualification of inner/outer harbor 04. 나포선박 Ship seizure 05. 개인 항해 Personal Voyage 06. 신조선 New Ship 07. 수출 선박 Export Ship
08. 선명 변경 Change of Ship's name 09. 폐선 예정 Ship to be abandoned 10. 남북한 출입 South-North Entry/Exit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 School ship or Government ship 12. 원양 조업선 Pelagic fishing vessel
8. 12번의 「검역 구분」은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For Section 12 「Type of Quarantine」 select one of the following codes:
1. 승선 On board 2. 서류심사 On paper 3. 검역조사 생략 Skip Quarantine Inspection 4. 검역 완료 Quarantine completed
9. 13번의 「검역조사 생략 신청사유」는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만 검역조사 생략 신청 가능)
For Section 13 「Reason for applying to skip Quarantine Inspection」, select one of the following codes:
(NOTE: Only vessels without infectious disease patients or death are allowed to skip quarantine inspection)
1. 운송수단이 화물을 내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목적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Temporary stay without unloading cargo for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①급유·급수 Loading Fuel or Water, ②물품공급 Supplying Goods, ③도착·출발증명서 수령 Certificate of Arrival/Departure, ④운송수단 수리 Vessel Repair, ⑤태풍 등 기상악화 Bad Weather
2.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 매개체가 없는 군용운송수단 Military transportation without infectious disease vector or infectious disease patient
3.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Transportation request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재난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유로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한 경우 Hea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requested to skip quarantine inspection due to national emergency
10. 16번의 「수속 장소 및 일시」는 입항·출항 전 C.I.Q. 기관의 수속을 받으려는 예정 장소와 일시를 적습니다. For 「Date/Place of CIQ Processing」 of Section 16, provide place and date you will undergo C.I.Q. process before arrival/departure.
1. 항구명 Name of Port 2. 내항 Inner Port 3. 외항 Outer Port
11. 17번 중 「이 항구 승선·하선 승무원/승객」란은 입항 시에는 승선·하선 예정 인원을, 출항 시에는 승선·하선 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For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of Section 17, provide number of crew members and passengers that will be embarking/disembarking or ha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12. 18번의 「선박위생 증명서」는 선박위생에 관한 증명서의 소지 여부, 증명번호,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증명서의 종류(관리/면제), 재검사 유무를 적습니다. 이 때,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소지 여부에 ‘아니오’라고 작성합니다. For 「Ship Sanitation Certificate」 of Section 18, indicate whether a valid sanitation certificate is available on board, the certificate number,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certificate, issued date, certificate class, and whether a reinspection is needed. Check no if sanitation certificate has expired.
13. 19번 「비고」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For Section 19, answer the ques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의 유무를 적습니다. Infectious disease vector on board: Check yes if there are indications of rats or insects on board that can infect or transmit diseases.
나. 오염물건 유무: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검역감염병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재한 물건이 있는 선박은 “있음”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선박은 “없음”으로 할 것)를 적습니다.
Contaminated goods on board: Check yes if Write down the contaminated goods by pathogen of infectious disease of quarantine even suspected things(If the vessel has a loaded goods from the current infected area, write “Yes”. If not, write “No”).
다. 위생조치 유무: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위생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형, 장소, 일시를 적습니다. Sanitary measures taken: Indicate sanitary measures such as quarantine, isolation, sterilization, and decontamination has been conducted in the ship. (If yes, write type of measure, place and date.)
라. 선의의 승선 유무와 진료 여부 및 결과: 배 안에 근무하는 선의의 승선 유무 및 진료 여부를 적습니다.(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료 결과를 포함할 것) Ship's surgeon on board and Treatment result(If any): Indicate whether a ship's surgeon is on board, whether treatment has been given, and result of treatment if treated.

승무원 및 승객 명부 Crew and Passenger List

☐ 승무원 명부 (Crew List)

운송수단명 또는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

도착 예정 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yy/mm/dd/hh/mm)

일련 번호 (No.)	직명 (Rank)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Birth Date)	주민등록 번호 혹은 여권번호 (ID No. or Passport No.)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국 적 (Nationality)	승선지 및 일자 (Port and Date of Boarding)	하선 여부 (Disembarkin g at this port?)

☐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운송수단명 또는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

도착 예정 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yy/mm/dd/hh/mm)

일련 번호 (No.)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Birth Date)	주민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ID No. or Passport No.)	좌석번호 (Seat No.)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국 적 (Nationality)	최종 목적지 (Destination)	탑승지 및 일자 (Port and Date of Boarding)

소독 결과 보고서 DISINFECTION REPORT

소독대상 Target Information	운송수단명(등록번호) Flight or Ship NO.	국적 Nationality
	운송수단 소유자/대리점명 Name of Company or Agency	총톤수 Gross Tonnage
	소독 장소 Place of Disinfection	소독 용적 또는 면적 Volume or Area of Disinfection

소독사항 Disinfection details	소독 종류 Type of Disinfection	사용 약제명 Chemical used
	실시기간 Disinfection Period(Date and Tim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약품 사용량 Volume of Chemicals used	희석비율 Dilution Ratio
	용적별 약품 사용량 Volume of Chemical used per Volume	

「검역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This is to report that disinfection has been performed as describ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of the Quarantine Act and Article 1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Quarantine Act.

Date:	년	월	일	장
소독업무대행자 대표				(인)
Disinfection Service Provided by				
작업 주임				(인)
입회자 운송수단의 책임자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격리통지서 Isolation/Quarantine Notice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격리자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입국일 Entry Date	성별 [] 남(男) Male [] 여(女) Female
격리 장소 Place of Isolation/ Quarantine	☐ 격리병동 Isolation ward	
	☐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진료소 Infectious disease control agency/Isolation Place, Sanitarium, Clinic	
	☐ 자가 Home	
	☐ 임시 격리시설 Temporary isolation facility	
	기간 Duration ~	전화번호 Telephone No.
주소 Address		

위의 사람은 「검역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격리대상임(격리하였음) 알려드립니다.

We hereby notify that the person identified above is subject to (or is under) mandatory isolation/quarantine as a person infected with or suspected to be infected with a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 of the Quarantine Act and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Quarantine Act.

※ 만일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Failure to comply with isolation or quarantine order is punishable by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a fine up to 10,000,000 w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국립○○검역소장 직인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이동 지시서
ORDER TO MOVE

수신 Recipient:

귀하 To: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운송수단 종류 Kind of Ship/Aircraft/Others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또는 용적 Gross Tonnage or Volume		회사명/대리점명 Name of Company/Agency	
입국 일시 Date of Entry		출발지역(도시) City of Departure	
지시 사유 Reason for the Order to Move			
지시사항 Instruction Details	☐ 회항 Return (Sail/Fly Back)		
	☐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 Move to Other Location for Quarantine (Location:)		

「검역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동 지시 대상으로 통보합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Quarantine Act and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Quarantine Act, report target for movement as instructed.

년(yyyy)

월(mm)

일(dd)장

국립○○검역소장

직인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소독증명확인서(물품) CERTIFICATE OF DISINFECTION(GOODS)

신청인 성명 Name of Applicant _____ 신청인 주소 Address of Applicant _____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_____
---	---

「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래 물품의 소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disinfection of the following goods has been performed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2) of the Quarantine Act.

소독 물품명 Name of Goods Disinfected	소독 물품 용적 및 수량 Volume and Quantity of Goods	소독 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소독 약제명 Chemical used (active ingredient)	소독 시간 및 온도 Duration and Temperature	투약량 Concentration	물품 분류번호 Distinguishing No.

서명 Signature: _____ 담당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	---

국립○○검역소장 증인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병원체 검사증명서(물품)

CERTIFICATE OF PATHOGEN TESTS (GOODS)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_____

물품명 및 수량
Name and Quantity of the Goods _____

「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물품에 대한 _____의 병원체 검사를 한 결과,
(병명)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pathogen test(s) for _____
(Name of Disease)
conducted for the above-mentioned goods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2) of the Quarantine Act.

검사 방법 Testing Methods	성적 Results	판정 연월일 Date	생산지(검역관리, 비검역관리지역) Area of Production (Quarantine inspection required / not required)	비고 Remarks

서명
Signature _____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증인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병원체 검사증명서(사람) CERTIFICATE OF PATHOGEN TESTS (PERSON)

성 명
Name : _____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 _____

생년월일
Date of Birth :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 _____

국 적
Nationality : _____

성 별
Sex : _____

「검역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_____에 대한 _____의 병원체 검사를
(검체) (병명)
한 결과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pathogen tests for _____ conducted with the _____ of
(Name of Disease) (Materials)
the above-mentioned person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3) of the Quarantine Act.

검사 방법 Method of Test	성적 Result	판정 연월일 Date	비고 Remarks
염색배양 검사 Staining of Culture			
혈청학적 검사 Serology			
그 밖의 검사 Other			

서 명
Signature : _____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 명
Signature :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증인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소독증명서(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CERTIFICATE OF DISINFECTION (VESSEL / AIRCRAFT / TRAIN / AUTOMOBILE)

발급 연월일

Date of Issue: _____

항구명/공항명/역명

Port/Airport/Station: _____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 _____

국적 Nationality	선박 종류 또는 항공기·열차·자동차의 형 Description of Vessel or Type of Aircraft/Train/Car
----------------	---

「검역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의 소독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disinfection has been execu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e Quarantine Act.

소독 장소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 면적 또는 용적 Volume or Area of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 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비고 Remarks

서명

Signature: _____

담당 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_____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증인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검역관리지역등 체류 · 경유 신고서

(앞쪽)

성명	성별 []남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 연월일
선박·항공기· 열차·자동차명	좌석번호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1)	2)	3)	4)
----	----	----	----

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발진
[]황달	[]의식저하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그 밖의 증상()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관련 약 복용	[] 현지 병원 방문	[] 동물 접촉
----------------	--------------	-----------

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없음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검역법」 제12조의2 및 제4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인은 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Quarantine Inspection Required Areas Travel History Declaration Form

停留・途径检疫管理地区等地申报单

(뒤쪽)

Name (姓名)	Sex (性别)	☐ Male(男) ☐ Female(女)
Nationality (国籍)	Date of Birth (出生日期)	
Passport No. (护照号码)	Date of Arrival (到达日期)	
Ship • Flight • Train • Car No. (船舶 航空 火车 汽车号码)	Seat No. (座位号码)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Please write full address(请填写详细地址)

Mobile Phone No. 手机号码(或韩国联系方式)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21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二十一天之内停留过的国家。

1)	2)	3)	4)
----	----	----	----

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you currently have or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21 days.
(过去二十一天之内或现在如有以下症状,请在症状前的括号内划“√”。)

☐ Fever (发烧)	☐ Chills (发冷)	☐ Headache (头痛)	☐ Sore throat (咽喉痛)	☐ Runny nose (鼻涕)
☐ Cough (咳嗽)	☐ Shortness of breath (呼吸困难)	☐ Vomiting (呕吐)	☐ Abdominal pain or Diarrhea (腹痛, 腹泻)	☐ Rash (出疹)
☐ Jaundice (黄疸)	☐ Loss of consciousness (意识模糊)	☐ Bloody mucus (粘膜出血) *Eyes, nose, mouth, etc (眼睛、鼻子、嘴等)	☐ Other symptoms(其他) ()	

If you marked any of the above symptoms, please mark all of the following that apply.
勾选上述“症状标记栏”时,请在下列项目的相应括号内划“√”。

☐ Any medication taken for symptoms? (服用相关症状的治疗药物)	☐ Any local hospital visits? (访问当地医院)	☐ Any contact with animals? (接触动物)
--	---	--

If none of the above symptoms apply, please mark the “No Symptoms” box.
若无相关症状,请在“无症状前”划“√”。

☐ No Symptoms (无症状)

Pursuant to Articles 12-2 and 41 of the Quarantine Act, failure to submit this Declaration Form, deliberately omitting or concealing information, or giving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health or your travel history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KRW 10,000,000.

若未申报或虚假申报停留或途径检疫管理地区等地的事实,根据《检疫法》第12条第2项和第41条规定,可被判处一千万韩元以下罚款

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correct.

填写人确认上述健康状态调查表所填内容属实。

Date (日期) (MM/DD/YYYY)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国立检疫所长 敬启

148mm×210mm[황색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정의)</u> <u>「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2조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매개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쥐</u> 2. <u>모기</u> 3. <u>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매개체</u>
<u>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u> ① <u>질병관리청장은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u>오염지역</u>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u> 2. <u>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u>	<u>제2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① ----- 법 제5조-----</u> <u>-----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u> <u>-----</u> 1. ----- ----- ----- <u>국가 또는 지역</u> 2. <u>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u>

<신 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오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이하 “오염인근지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내로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특정행정단위의 지역

3.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나 특정행정단위의 지역

② -----
----- 검역관리지역등-----

-----.

③ -----
----- 검역관리지역등-----

-----.

<삭 제>

1.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 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2.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인근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검역조사 대상인 화물)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 및 액체류 화물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및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란 검역감염병 환자등

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그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소지한 물품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

 -----.

1. ~ 5. (현행과 같음)

② 「검역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

이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승무원 또는 승객을 내리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검역 통보 등) ①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항만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통보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검역 통보 등) ①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역 장소 등) ① (생략)

<신 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4. (생략)

5.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되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도착한 경우

6. 선박 내에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7. (생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

제5조(검역 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2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현행 제7호와 같음)

6. ----- 제5호-----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4항의 검역구역
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검역구역으로 한다.

④ (생략)

<신설>

제6조(검역조사 등) ① 운송수단
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
(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즉시 검역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 등)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 안전상의 이유 등으
로 검역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검역공무원의 업무
상 안전등을 위해 즉시 검역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검역소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검역조사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역소
장은 검역조사를 위해 출입국자
가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 기기를 이용하여

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운송수단별 신고서(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다)

1) 선박: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2) 항공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3) 열차·자동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부(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다)

다.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승객 및 승무원이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출하거나 운송수단의 장
이 일괄하여 제출한다). 다
만,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
킨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
지역에서 직접 들어오거
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
서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
에 들어오는 운송수단.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
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
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운송수단으로서 법 제17
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
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

단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
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운송수단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운송수단

6) 「국제보건규칙」에 따
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
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
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
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운송
수단

라.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법 제
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입국하
는 사람으로서 오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의 경우에
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승객 및 승무원이 직접 제출한다)

마. 도보출입자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도보출입자가 제출한다)

바.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

가. 항해일지 · 항공일지 또는 운항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한다)

나.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한다)

다.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승객 및 승무원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항해일지 · 항공일지 또는 운

당 승객 및 승무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제1호가목 1)부터 7)까지에 따른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한다)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한다)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운송수단별 특성에 따라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에 따른다.

④ -----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

-----.

<삭 제>

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의 종류 및 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을 신고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
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
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
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국자가 별
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
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국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
의 장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④ 선의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신 설>

<신 설>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촉자에 대한 정보의 요구
2. 접촉한 동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설치·운영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소장이 정한다.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명부
3.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제출한

<신 설>

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승기 검역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한 경우

2.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3.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기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명부

3.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제출한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한 경우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선원교대가 있었던 선박의 경우

4.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신 설>

5.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경우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7.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검역 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

제7조(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①·② (생략)
<신설>

제8조(전자 검역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출입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운송수단 및 출입국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역조사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전자 검역을 신청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장은 검역소장이 전자 검역 신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① 검역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장에게 도착 후에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

<삭 제>

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는 선박으로서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

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
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④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변
경사항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하
고, 심사한 결과 검역조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취소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항, 제
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
은 선장은 관할 세관, 관할 출입
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 행
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로 한다.

제11조(소독 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운

<삭 제>

제11조(소독 명령) ① -----
법 제15조제1항-----

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3항, 제27조 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3조(격리 사실의 통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로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① ----- 제27조 제2항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

려야 한다.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2. 3. (생략)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특별

호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때,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설 격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고, 국내에 급속히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인 경우
2. 검역관리지역등이 아닌 곳에서 입국한 사람으로서 의심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난 경우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
질병대응센터장-----

-----.

1. -----
시설
2. 3. (현행과 같음)
4. -----
----- 관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신 설>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말한다) 등-----

제14조의3(접촉자 격리기간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최대 잠복기
5.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 -----

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
 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
 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
 도할 수 있다.

제18조(회향 등의 지시) 법 제23
 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
 송수단의 장에게 회향하거나 다
 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하도록 지
 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
 식에 따른 회향 · 이동 지시서로
 한다.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
 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2. ~ 4. (생 략)

제20조(운행 중 사망한 사람의 시
 체에 대한 검역조사) ①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
별자치도-----

 -----.

제18조(이동 등의 지시) -----

 -----지정하는 장소로

 ----- 이동 -----
 -----.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등) -----

 -----.

1. ----- 시체검안서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
 한 검역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 등 발급)

발급)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생략)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

① -----

선박위생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 증명서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소독증명확인서: -

3. -----
----- 병원체 검사 증명

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별
지 제29호서식

5. (생 략)

제23조(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8조제3항제1
호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
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
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
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
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
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한다.

<신 설>

제24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
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서: -----

4. 법 제28조제3항-----
병원체 -----

5.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준영구 보관하여야 ---.

④ 그 밖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발급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
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신 설>

제25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28조의3제1항-----

② 법 제28조의3제3항-----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송수단별 신고서와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제출

4. 제8조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 및 변경 통보

5. 제9조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6. ~ 11. (생략)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4제1항, 제6조의6제1항---- 보건상태신고서-----

4. 제6조의5에 따른 선박 검역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삭제>

5. ~ 10. (현행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③ -----

-----제8호 및 제10호-----

--. -----

--.

④ 법 제29조2제2항제5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제25조의3(오염지역의 체류·경유 신고)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제1호다목1),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3. 그 밖에 검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시스템

<삭 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선의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25조의4(오염지역 등의 안내)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오염지역 등에 대한 검역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2.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① -----

----- 검역관리지역등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그 밖에 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의6(검역소 시설·장비 등)

법 제29조의9에 따른 검역소의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① <u>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은 기술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u> ② <u>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1. <u>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및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u> 2. <u>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역장비</u> 3. <u>기타검역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u>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u><삭 제></u> <u><삭 제></u> ①·②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